

##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 
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67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의거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 추가(안 별표2)

## 4. 관계법령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0조(사용료 등) 제4항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연관된 안건으로
-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% 감면해 주어 우수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1. 7.]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40조(사용료등)**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이용자로부터 사용료, 수강료 등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.

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4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,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,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·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공고·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·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·지출 및 관리 등은 사무원이 하되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. <개정 2021.11.16.>